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989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검토	2
IV. 개별법에 대한 검토	4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 지표심의위원회 폐지)	4
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 팅위원회 폐지)	7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연구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4
4. 「한국연구재단법」(외부평가위원회 폐지)	2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총괄검토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22. 7월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자체 정비계획 마련 및 정비 추진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및 관계부처 의견조화와 입법예고('22.9.6. ~ '22.9.16.)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22. 9월)을 거쳐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원자력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한국연구재단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대하여 일괄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동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비대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연구재단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표준 성과지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전문가 심의 절차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인공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핵심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분야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는 현행 제15조에서 “외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IV. 개별법에 대한 검토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지표심의위원회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생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삭 제></u>
③ <u>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¹⁾로 구성되며,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개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 표준성과지표 개발 경과 〉

- (1차) 28개 R&D 사업유형 구분, 164개 성과지표 제시('05.12)
- (2차) 10개* R&D 사업유형으로 단순화(28→10개)('13.01)
- (3차) 사업유형별 5대 성과분야 연계 지표 설정을 위한 152개 성과지표(질적 지표 104개) 제시('13.12)
- (4차) 사업유형별 핵심성과 제시, 단순 양적지표 삭제, 151개 성과지표(질적 지표 107개) 정리('14.12)
- (5차) 과제에서 활용 가능한 질적 지표 추가 발굴, 182개 성과지표(질적 지표 136개)로 확대*('20.1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분과위원회 개최가 없어지면서²⁾ 2021년부터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회의가 개최되지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과위원회를 국가R&D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위해 운영했으나, 2021년 관련 제도 개편(전략계획서로 변경) 이후 본회의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않고 있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개최현황(2019년 ~ 2024년)>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13	1	0	1	12	12	0
2020년	14	1	0	1	13	13	0
2021년	3	3	0	3	0	0	0
2022년	2	2	0	2	0	0	0
2023년	0	0	0	0	0	0	0
2024년	0	0	0	0	0	0	0
총계	30	5	0	5	25	25	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2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성과지표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그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표준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한 현행 조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를 없애더라도 추후 필요시에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성과평가전문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함)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u>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u>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1. ----- ----- ----- --- 「 <u>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u>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 <u>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u>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

현행	개정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 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 ⑤ (생략)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 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 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 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 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 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_____ _____ <u>국가과</u> <u>학기술자문회의</u>_____ _____. _____.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4. <u>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u> 5. <u>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u> 6. <u>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u> 7. <u>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u> 8. <u>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u> 9. <u>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④ <u>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u>	

현행	개정안
<u>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 2. <u>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3. <u>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⑤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를 둔다.</u> ⑥ <u>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u>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② (생략)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u>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u>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u>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 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 14. (생략) ④·⑤ (생략)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u>국가과학기술지문회의</u>-----.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1. <u>기본계획</u>----- ----- ----- ----- 2. <u>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u> -- ----- ----- ----- ----- 3. ~ 1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개최현황(2020년 ~ 2024년)>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1	0	0	0	1	0	1
2021년	2	1	0	1	1	0	1
2022년	3	1	0	1	2	0	2
2023년	2	1	1	0	1	0	1
2024년	2	1	0	1	1	0	1
총계	10	4	1	3	6	0	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구성함.

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 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⑥ (생략)

초고성능컴퓨터는 인공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인프라로서 초고성능컴퓨터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정부에서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의 도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사업이 핵심부품인 GPU의 가격 급증, 환율변동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결정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은 원활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
 • 운영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랍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회의)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회의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

<삭 제>

<삭 제>

제49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48조제2항-----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 ⑦ (생략)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근로자과건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전문업종에 대한 심의·의결을하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개정안은 두 위원회가 특정 지역에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⁵⁾는 연구개발특구⁶⁾와 달리 “기초연구”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에 기초연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에는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반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는 방안과 이를 존속하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⁷⁾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립법안심사소위원회(2022년 12월 20일) 회의록을 참고함.

4. 「한국연구재단법」(외부평가위원회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외부평가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② (생략)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삭 제>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거나 해임·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나. 검토의견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함)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해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음.⁸⁾

연구사업관리전문가는 학술 및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된 전문가로서, 분야별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기획 및 정책수립, 예산 배분방안 수립,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관리 및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은 중요함.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에서 연구사업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등을 검토하는 외부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에게 연구사업관리자 평가를 맡기되⁹⁾,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

8)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거나 해임·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위원들로 하여금 한국연구재단 ‘외부에서’ 연구사업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¹⁰⁾

따라서 “외부평가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현행 제15조에서 “외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

9)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생략)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10) 「한국연구재단법」 제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회의록(제281회 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의 내용상, 외부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연구재단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당시주무부처 장관)이 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참고함.